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(2015. 7. 1. 시행)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'수급자' 중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의 일부를 받는 자로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변경 : "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"에서 "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3호에 따른 생계 · 의료 ·주거급여 수급자"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, 같은 법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2015.10.22.~2015.11.11.)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”를 “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”로 한다.
제2조 본문 중 “군수”를 “성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”로 한다.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 ·주거 급여 수급자”로,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중·고등학교”를 “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”으로 한다.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거친후”를 “거치 후”로 한다.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	성주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
제2조(기금조성)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. 다만,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	제2조(기금조성) 성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----------. ----------.
제3조(융자대상)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.	제3조(융자대상) ①---------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3호에 따른 생계・의료・주거급여 수급자--- 어느 하나에 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직계 비속에 대한 중・고등학교의 학자금	4. ----------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융자금액등) ① (생 략)	제4조(융자금액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. 다만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년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 거치 후 ----------. ----------.
제6조(융자금 상환 등) ① (생 략)	제6조(융자금 상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	②---------- 어느 하나에 ----------.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